

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-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.
-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1호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근거하여 「청년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청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청년 인재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의 수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,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 내 용어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2021. 11. 23.

미래청년기획단장 김 철 희